

평창군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상기준을 낮추어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보상 제외대상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
 - “총 피해면적이 330m² 미만인 경우”를 “총 피해면적이 100m² 미만인 경우”로 개정(안 제5조제1호)
 - “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”를 “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”로 개정(안 제5조제3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붙임」
- 나. 예산조치 : 보상 대상이 늘어날 경우 예산이 증액
- 다. 관계부서승인 : 기획감사실 자치법규 심사완료
- 라. 입법예고 : 2013. 1. 21 ~ 2.12(22일간)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「붙임」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330m²”를 “100m²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30만원”을 “5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보상 제외대상) 피해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총 피해면적이 <u>330m²</u> 미만인 경우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총 피해보상액이 <u>30만원</u> 미만인 경우</p> <p>4. · 5. (생 략)</p>	<p>제5조(보상 제외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00m²</u>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5만원</u> ----- -----</p> 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3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)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비용추계 산출이 어려우며 향후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환경과 환경과장 최찬웅
연락처	(033) 330 -2340

관계법령

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12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,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·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.

1.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
2.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
3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2조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
4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
5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
6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7.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

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과 절차,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야생동·식물보호법 시행령

제7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·방조망(防鳥網)·경음기(警音器)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 2. 피해보상기준 :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·임산물·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-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